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4. 이언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3.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언주 의원)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

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 ☐ 다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대신하여 현행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의 유감 등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판단하게 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